



##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( 약칭: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)

[시행 2025. 11. 1.] [국토교통부령 제1530호, 2025. 10. 31., 일부개정]

국토교통부 (물류정책과-유가보조금) 044-201-3996

국토교통부 (첨단물류과-차고지, 휴게소, 밤샘주차) 044-201-4010

국토교통부 (물류산업과-운수종사자격, 적재물 배상보험, 자가용 유상운송, 가맹사업) 044-201-4026

국토교통부 (물류산업과-실적신고, 주선, 위수탁 계약) 044-201-4020

국토교통부 (물류산업과-안전운임, 안전운송원가) 044-201-4019

국토교통부 (물류산업과-허가, 양도양수, 상속) 044-201-4022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 7. 11.>

1. "관할관청"이란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 · 도지사"라 한다)를 말한다.
2. 삭제 <2014. 9. 19.>
3. "화물취급소"란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장소로서 화물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.
4. "사업장"이란 화물자동차의 주차 · 정차시설 및 사무소 등이 갖추어진 장소로서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**제3조(화물자동차)**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"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일반형 · 덤프형 · 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· 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중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는 제외한다)를 말한다. 이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.

<개정 2013. 3. 23., 2020. 10. 8., 2021. 9. 24.>

1.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
2.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 - 가. 「경비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
  - 나.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**제3조의2(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)** ①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1. 화주(貨主)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
2.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
3. 화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
  - 가.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 · 수산물 또는 축산물
  - 나.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